

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법  
일부개정법률안  
(박지혜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8608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4. 24.

발 의 자 : 박지혜·권향엽·진성준  
박해철·김 윤·장종태  
임미애·허 영·안도걸  
박용갑·이재강·박 정  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를 위원장 2명을 포함한 30명 이상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면서 법률과 시행령에 따라 각 부처 장관에 해당하는 공무원 22명이 당연직 위원이 되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 위와 같이 정부측 인원이 위원회의 다수가 되는 경우 탄소중립을 위한 정책에 관하여 정부의 영향력이 과다대표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위원회에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함으로써 민간 분야의 정책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(안 제15조제4항).



##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.

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위원회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) ① 이 법 시행 후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당시 제15조제4항 후단의 개정규정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정규정의 요건이 충족될 때까지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.

② 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하여는 제1항에 따라 제15조제4항 후단의 개정규정을 충족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      행	개       정       안
<p>제15조(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설치) ① ~ ③ (생략)</p> <p>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. <u>&lt;후단 신설&gt;</u></p> <p>1. ~ 3. (생략)</p> <p>⑤ ~ ⑨ (생략)</p>	<p>제15조(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설치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----- -----.</p> <p><u>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.</u>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⑤ ~ ⑨ (현행과 같음)</p>